

- 기간 : 1993 ~ 2002 년
- 상환원금 및 이자

원금	530,000천원
이자	241,000천원
- 상환재원 : 사업수입 771,000천원

【 10 】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

발의년월일 : 1992. 12.

발 의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5조7항

주요골자

9만 군민의 문화공간과 집회 장소는 물론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각종 행사 및 체육 종목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주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문화 및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양주군의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체육관겸 다목적 군민 문예회관 1동 (지하 1층, 지상 2층) 1,641평을 건립코자 함.

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

양주군수가 제출한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을 동의한다.

1. 목적 : 체육관겸 다목적 군민 문예회관
2. 위치 : 광직면 광식리 178-1 번지의 10필지

3. 규모 : 지하 1층, 지상 2층 1,641평

4. 사업비	총	62억원
	군비	20억원
	도비	42억원

【 11 】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

발의년월일 : 1992. 11.

발 의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1항

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

주요내용

○ 취 득

- 토 지 : 5필지 16,951m²
8

- 건 물 : 4동 485 —

○ 처 분

- 토 지 : 1필지 14,310 m²

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

양주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.

1. 취득 재산